



제41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신설 〉
■ 강훈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25756호)

2024.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훈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3. 12. 5.
3. 회 부 일 : 2023. 1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게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를 할 근거가 없음.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총 24건, 369억3,2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 특히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원 규모의 배임 사건을 금융당국이 적발하고도 직접 제재하지 못함.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내부에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밖에 할 수 없었으며,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롯데카드 경영진은 자체 징계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음.

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상호저축은행법」은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각 업권법의 “별표”에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횡령·배임에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게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50조의3 및 별표 제37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금융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의 근거를 직접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및 별표 제3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별표]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53조제4항 관련) <u><신설></u>	<u>제50조의3(수뢰 등의 금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횡령, 배임, 증여, 그 밖에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u> <u>② 제1항은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u> [별표]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53조제4항 관련) <u>37의2. 제5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횡령, 배임, 증여, 수뢰요구, 취득 또는 약속을 한 경우</u>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연도별 금융사고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여도 금융당국이 해당 임직원에 대해 직접 행정제재를 하기 위한 근거가 부재함.

[표 1] 여신전문회사 연도별 횡령·배임 금융사고 발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신고·접수 기준)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횡령·유용	3	209	2	1,884	3	424	0	-	3	787	1	88
업무상 배임	3	5,120	2	1,644	1	387	0	-	1	8	3	9,136

(자료: 금융감독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임원의 자격요건¹⁾이 규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 라. (생략)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 사. (생략)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3. ~ 4. (생략)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행장·부행장·부행장보·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 7. (생략)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 2. (생략)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 8. (생략)

②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職)을 잃는다. 다만,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지 아니한다.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3. 문책경고

4. 주의적 경고

5. 주의

[별표]

1. 제5조를 위반하여 임원 선임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되어 있으나 직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임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후에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금융당국으로서는 고발조치밖에 할 수 없고 행정적 제재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체 징계에만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 개정안은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하여, 신속히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 및 「상호저축은행법」 3)에서 각각 금융투자업자와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횡령·배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임요구 (이하 생략)

[별표 1]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

31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별표 21]

2.라.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경우

3)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행정처분)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그 임직원이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해임 권고 또는 직무정지

4.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5조의3에서 같다)의 면직 요구

5.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별표 1]

60. 제37조의5를 위반하여 횡령, 배임,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한 경우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행정제재 근거를 이미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의 신설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해 보임.⁴⁾

□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임직원의 횡령, 배임 등에 대해 직접적인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임직원을 신속히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정제재를 통해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임직원까지 포함⁵⁾하고 있는데, 동 협회는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관이므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신용협동조합법」은 현재 행정처분 근거가 없지만, 직접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자 하는 법안(강훈식의원안)이 발의되어 있음.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는지를 감독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경고·문책(問責)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직무정지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협회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는 “협회”로 본다.

-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금융업을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그 성격을 달리하며, 유사한 성격의 금융투자협회는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가 없으므로, 형평성 측면에서도 과도한 면이 있음.
-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역시 횡령 등 금융사고의 통제가 필요하며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금융투자협회와 달리 기부금관리재단을 별도 소유⁶⁾⁷⁾⁸⁾하고 있고, 보조금 사업을 수행⁹⁾하기도 하는 등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 한편,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함.

○ 첫째,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금지규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의 수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이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도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7조(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① 협회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의 사용잔액(이하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라 한다) 및 신용카드포인트 등 기부금을 통한 사회 공헌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 등을 위하여 기부금관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은 2017년 3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음.

8)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 설립 이전인 ‘16~17년 POS 가맹점 단말기 보안강화 사업을 위해 조성한 기금의 운용 과정에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직원의 약 60억원 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9)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21.10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조사업자로서 총 7,983.8억원의 예산을 집행(’21.8.6.~’23.10.31.)하였음.

- 그러나 증여, 수뢰와 달리 횡령과 배임에는 직접 또는 간접을 구별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직접 또는 간접’이 증여와 수뢰만을 수식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¹⁰⁾¹¹⁾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50조의3(수뢰 등의 금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u>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횡령, 배임, 증여, 그 밖에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u> ② 제1항은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50조의3(수뢰 등의 금지) 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u>횡령, 배임,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뇌물의 수수, 요구 또는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u> ② 제1항은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 둘째,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제재 요건으로서 임직원이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타 법률은 행정 제재의 요건으로 소속 임직원을 주체로 하는 법

10)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의5는 ‘횡령, 배임,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취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위반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제4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로만 주체를 규정하여 임직원의 행위를 포함하지 않음. 이로 인해 행정제재 적용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수정안
제53조(감독) ① ~ 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u>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u>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53조(감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u> ----- ----- ----- ----- ----- --. ⑤ ~ ⑥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119